

Deloitte Newsletter

2013 년 4 월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새 도메인 도입 앞서 등록상표 보호센터 운영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기존 닷컴(.com) 이외에 닷북(.books), 닷푸드(.food) 등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 상표 보호를 위해 4월 26일부터 **‘등록상표 정보센터(Trademark Clearinghouse)’**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주소체계가 변경되면, 닷삼성(.samsung), 닷엘지(.lg) 등 회사 이름이나 닷무비(.movie), 닷서울(.seoul) 등도 최상위 도메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딜로이트는 등록상표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닷컴 이외의 다른 최상위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구매할 때 기존의 등록상표와 충돌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각 나라별 언어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등록상표 정보센터 바로가기](#) | [관련기사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 전자발급 가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 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산세 부담을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정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2013. 3. 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포함된 “2013년 조세지출 운영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조세지출 제도는 상시적으로 성과를 평가·정비하며 각 소관 부처 성과정보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 관리함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조세지출 지원원칙을 마련
- 조세지출에 대하여 해당 부처의 평가를 강화하여 소관부처가 1 차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유사한 군별로 조세지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Tax 판례]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2013.3.21. 선고 2011 다 95564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13억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결의 취지는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본 판결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들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Tax 판례] 가공매출에 대한 매출세액만큼 불공제 매입세액을 임의로 늘려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조심 2011 중 170, 2012.12.31)

조세심판원은 가공매출과(그보다 적은 금액의) 가공매입이 동시에 발견되어 가공매출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감액경정하면서 동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도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으로서 국세환급금 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결정은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확인되지도 않은 금액을 불공제 매입세액에 임의로 가산하는 과세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지난 2월 21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이 한·콜롬비아 FTA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번 FTA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갖고 있어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남미의 FTA 허브로 부상 중인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교역은 2012년 수출 14억 6800만달러, 수입 4억 1500만달러로 총 18억 83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FTA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등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올해 소비자·기업보호 위한 시중 원산지 단속 강화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2013년 원산지 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① 원산지 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중간재, ②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 테마로 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작년 단속실적과 올해 단속테마를 반영하여 원산지표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5대 중점 단속 품목」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5대 중점 원산지 단속 품목		
No.	품 목	선정 물품
1	건축자재	안전과 국내생산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석제품, 형강류 등
2	자동차부품	AS 용으로 수입·판매되는 유리·휠·필터·벨트류 등
3	명품·잡화	제3국 생산 및 병행 수입되는 유명 지갑·액세서리·신발류 등
4	유아용품	면역력이 취약한 유아건강을 위협하는 젖병·완구·기저귀 등
5	먹을거리	수입품과 국산간 가격차이가 커 국산둔갑 위형성이 높은 명태·쌀·육류·소금·미역·낙지·김치 등

어수선한 M&A 시장... M&A는 없고 '대안' 찾기 분주

M&A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배경은 기업과 사모펀드(PEF)가 '돈 쓰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M&A 시장의 단골기업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PEF 들은 공개경쟁 입찰거래에서 매각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PEF 만이 인수자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매각자도 줄었습니다. 한계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알짜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정권교체를 맞이하면서 공기업은 물론, 대형 금융지주회사나 '대기업 때리기'에 떨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M&A 의사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내부 단속과 외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층~12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